

ESG 평가업무에 관한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단법인 한국이에스지기준원(이하 “기준원”이라 한다)의 ESG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직무상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기준원의 ESG 평가본부 직원(인턴을 포함한다), 심화평가 심의위원회(「ESG 심화평가 심의에 관한 기준」 제5조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 및 ESG 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기준원의 원장과 부원장(이하 “임원”이라 한다)(이하 합하여 “직무수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직무수행자의 직무상 이해상충 방지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이해상충 방지 의무) ① 직무수행자는 ESG 평가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손상시키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직무수행자는 이 지침에 반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ESG 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직무수행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해당 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직무수행자는 직무수행과 관련있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재산적 이득을 제공받아서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이해상충행위 금지

제4조(고객사 등 관련 이해상충 행위 금지) ① 직무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소속 임직원(대리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기준원의 업무에 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지시·요청에 응하는 행위

가. ESG 평가 대상기업과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기준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의결권 자문서비스 또는 책임투자 관련 자문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받는 기관(이하 “고객사”)과 그 계열회사(이하 합하여 “고객사 등”이라 한다)

다. 기준원의 사원기관

2.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그 소속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로부터 기준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기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그 소속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기준원의 ESG 평가 정책 결정이나 실제 업무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오인을 받을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지시·요청 또는 이익제공 제안 등을 받은 직무수행자는 기준원의 이해상충방지 정책을 설명하고 이를 거절한 후 지체없이 ESG 평가 부문 준법감시인/법무담당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에게 이를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준법감시인에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책임투자 부문 준법감시인/법무담당자 또는 부원장에게 신고한다. 이때 사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 대상기업의 상호가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1조 제6항에 규정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제14조 제2항에 따라 회피 신청을 한 경우
 3. 휴가, 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부재중인 경우
- ③ 직무수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리 기준원의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안내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5조(의결권 자문 및 책임투자 자문 업무 관련 이해상충 행위 금지) ①

직무수행자는 고객사에 대한 ESG 평가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무수행자는 ESG 평가업무 전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SG 평가업무와 기준원의 의결권 자문 또는 책임투자 자문 서비스와의 연관성을 제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2. 기준원의 의결권 자문 또는 책임투자 자문 업무 담당자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참여시키는 행위. 다만, 정책연구본부(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연구위원 또는 책임투자 부문 준법감시인/법무담당자(의안분석 심의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ESG 평가와 관련한 일반적인 기준이나 정책·법률에 대한 연구·자문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고객사 등의 ESG 평가에 대한 영향력을 암시 또는 제시하는 행위
4. 기준원의 ESG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사 등에게 이해상충의 우려

가 있는 일체의 추가적인 혜택을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모든 행위

5. 기타 기준원의 의결권 자문 또는 책임투자 자문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

제6조(평가 대상기업 관련 이해상충 행위 금지) ① 직무수행자는 기준원의 ESG 평가 대상기업에게 유상으로 ESG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영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기준원의 「ESG평가 등 관련 상담활동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상담활동은 이 항의 영리 활동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직무수행자는 평가 대상기업 및 그 계열회사, 그 임직원(대리인을 포함한다)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재산적 이득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직무수행자는 ESG평가기간(사전조사 기간 포함) 동안에는 평가 대상기업 및 그 임직원(대리인을 포함한다)과 기준원의 내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사원기관 관련 이해상충 행위 금지) ① 직무수행자는 사원기관 및 그 계열회사에 대한 ESG 평가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무수행자는 사원기관과 ESG 평가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은 경우는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국내외 법령 또는 주무관청의 지시에 따라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사원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2. 공익적 목적에 따라 사원기관에 ESG 평가 관련 데이터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ESG 평가 업무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임원 관련 이해상충 행위 금지) ① 임원은 직무수행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또는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원은 사외이사·경영자문·고문 등 취임, 특강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평가 대상기업에게 유상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영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이해상충 금지행위 사전확인) 직무수행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이해상충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준법감시인의 확인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다만 준법감시인에게 제시한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중요 사실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이해상충 관련 제보 등의 처리 절차) ① 직무수행자는 자신 또는 다른 직무수행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평가 대상기업 또는 고객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이해상충 우려에 대한 제보를 받는 경우 상위 결재권자와 준법감시인(단 상위 결재권자가 관련되었을 경우 준법감시인에게만 신고한다)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직무수행자로부터 이해상충 우려에 대한 제보를 받

은 경우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 가능성을 평가한 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1항의 상위결재권자(단 제1항의 상위결재권자가 관련되었을 경우 부원장)와 협의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ESG 평가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이러한 사실을 평가 대상기업 등 업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직무수행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평가 대상기업 또는 고객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이해상충 우려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경우 본부장은 이해상충 평가 및 이해상충 완화를 위한 조치가 완료된 후 이러한 조치 및 통지에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기간 내에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전자우편 포함)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특별이해관계

제11조(정기적 신고의무) ① 본부장은 매년 「ESG 평가 및 등급부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라 평가 대상기업이 지정된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평가 대상기업 지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특별이해관계 확인 대상 회사(제12조 제1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를 포함하여, 이하 “대상회사”라 한다) 명단을 직무수행자 및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상회사 명단을 통지받은 직무수행자는 대상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이해상충 확인신고서와 금융투자상품 잔고현황신고서를 보유 중인 계좌에 대

한 잔고증명서와 함께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 해외출장, 본인 입원 등 위 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해상충 확인신고서 및 금융투자상품 잔고현황신고서의 작성기준일은 평가 대상기업 지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매년 제2항의 신고 기한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직무수행자에 관하여 대상회사와의 사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결과를 표시하는 이해상충표를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자가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보고기한 미준수 및 허위·불성실한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준법감시인은 해당 직무수행자에 관한 부분은 해당 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⑤ 직무수행자가 제2항의 신고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지체없이 그 직무수행자가 ESG 평가본부 직원인 경우에는 본부장(해당 직무수행자가 본부장인 경우에는 부원장)에게, 심의위원회 위원인 경우에는 위원장(해당 직무수행자가 위원장인 경우에는 부원장)에게 각각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통지를 받은 본부장 또는 위원장(그 직무수행자가 본부장 또는 위원장인 경우에는 부원장)은 즉시 해당 직무수행자가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대상회사는 본부장이 해당연도 평가 대상기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⑦ 제2항에서 “특별한 이해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무수행자 또는 그 배우자가 대상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3

년 이내에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경우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직무수행자의 계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ETF 등 공모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는 제외)

가. 대상회사가 발행한 주식, 주식관련사채 및 신주인수권

나. 가목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3. 직무수행자가 대상회사와 최근 3년 이내에 자문용역계약, 금전대출 등 신용거래를 한 경우(다만 대상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서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

⑧ 평가 대상기업이 지정된 이후 새로이 직무수행자가 된 자가 있는 경우 제1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기업 지정일은 그 직무수행자의 선임·채용일·전보발령일로 본다.

제12조(대상회사 변동시 수시 보고의무) ① 본부장은 해당연도 중 ESG

평가 대상인 기업에 관한 변동(평가 대상기업 자체의 합병·분할,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규상장 등에 따른 평가 대상기업 제외 및 추가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대상회사 명단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직무수행자 전원 및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상회사 명단 변경 통지를 받은 직무수행자는 준법감시인에게 특별한 이해관계 여부를 보고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은 지체없이 이를 이해상충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수행자에 대하여는 제11조 제2항 및 제7항을, 본부장 또는 위원장(그 직무수행자가 본부장 또는 위원장인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준법감시인에 대하여는 제11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대상회사 제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특별이해관계 변동시 수시 보고의무) ①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신고 이후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발생·변동하였거나 이를 알게 된 직무수행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동일 기준 잔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다만 동항의 ‘통지일’은 ‘특별한 이해관계 발생·변동일 또는 이를 알게 된 날’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준법감시인은 지체없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14조(특별이해관계 사전확인 등) ① 직무수행자는 자신이 제11조 제7항의 “특별한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준법감시인의 확인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다만 준법감시인에게 제시한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중요 사실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상회사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ESG 평가본부 소속 직무수행자는 본부장(해당 직무수행자가 본부장인 경우에는 원장), 심의위원회 위원인 직무수행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해당 직무수행자가 위원장인 경우에는 원장)에게 스스로 해당 업무에서 회피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 또는 위원장(그 직무수행자가 본부장 또는 위원장인 경우에는 원장)은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동 회피신청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각각 ESG 평가본부 소속 직무수행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인 직무수행자가 대상회사에 대하여 특별

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우려할 만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원장이 본부장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도 같다.

제15조(업무배제) ① 본부장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각각 ESG 평가본부 소속 직무수행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인 직무수행자가 이 지침에 따라 대상회사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신고·보고하거나 회피신청을 한 경우 해당 직무수행자를 해당 대상회사에 관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각각 ESG 평가본부 소속 직무수행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인 직무수행자가 대상회사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직무수행자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 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동 배제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자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직무수행자가 ESG 평가본부 소속인 경우에는 본부장(해당 직무수행자가 본부장인 경우에는 원장), 그 직무수행자가 심의위원회 위원인 경우에는 위원장(해당 직무수행자가 위원장인 경우에는 원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부장 또는 위원장(그 직무수행자가 본부장 또는 위원장인 경우에는 원장)은 해당 직무수행자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자(특별한 이해관계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자나 회피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가 본부장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경우 원장은 본부장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고 당해 업무에 관하여 본부장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원장은 지체없이 동 배제 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원의 인력 상황 및 업무 수행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제11조 제7항 제2호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직무수행자의 대상기업별 금융투자상품 보유금액이 원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원장은 준법감시인과 협의하여 해당 직무수행자를 업무배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제한 등

제16조(매매거래 제한) ① 직무수행자는 매매거래 제한기간 동안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평가 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제11조 제7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한다. 이하 “매매거래제한 주식등”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심의위원회 위원(준법감시인인 위원은 제외한다)의 경우 심의위원회(개별 평가 대상기업의 평가와 관련된 안전이 상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소집일부터 ESG 등급 공표일까지
2. 제1호 이외의 직무수행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간
 - 가. ESG 기준위원회(ESG 등급부여 안전이 상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소집 통지 2주 전부터 ESG 등급 공표일까지
 - 나. ESG 평가·등급 소위원회(등급조정 안전이 상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최일부터 조정된 등급 공표일까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자가 되기 이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2.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취득 후 처분하는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제17조(매매거래 방법) ① 직무수행자는 매매거래제한 주식등을 매매거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거래할 것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3. 매매거래 명세를 제18조에 따라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할 것
4.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라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할 것
5.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

②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이 항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직무수행자가 거래하고 있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직무수행자가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

는 경우

- 다.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그 밖에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 라. 직무수행자가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 2.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다.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그 밖에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제18조(매매거래 명세 등 통지) ① 직무수행자는 자신의 계산 또는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매매거래제한 주식등에 관한 매매거래 명세 및 잔고현황을 성실히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직무수행자는 매매거래제한 주식등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명세서를 ESG기준위원회의 ESG 등급부여 결의 종료 후 13영업일 이내에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준법감시인인 위원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3항의 매매거래명세서 대상 기간 동안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명세서는 직전 연도 ESG 등급부여 결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당해 연도 ESG 등급부여 결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기간 중에 새로이 직무수행자가 된 경우에는 그 선임·채용일·전보발령일부터 당해 연도 ESG 등급부여 결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거래내역을 대상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 통보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매매거래 명세 통지 시 제17조 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폐쇄되지 않은 계좌 모두에 대하여 매매거래 명세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계좌개설 신고) ① 직무수행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등을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본인 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고 개설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계좌 개설이 있는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한 평가 대상기업 지정일 또는 ESG 등급부여 결의 종료일로부터 13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좌개설 신고 시 이미 신고한 기존 계좌 외에 다른 신규계좌를 개설한 경우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제17조 제2항에 따른 행위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통지, 신고사항의 심사) ①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자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을 지체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자가 통지, 신고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재내용 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직무수행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인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직무수행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계좌개설 및 거래 내역 등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직무수행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21조(통지, 신고의무 적용 예외)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및 제19조의 통지/신고 의무기간 중 1개월 이상 연수·파견·휴가·휴직 중인 직무수행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 통지 및 제19조의 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무수행자는 그 연수·파견·휴가·휴직의 종료 이후 최초 도래하는 통지/신고일에 통지/신고 의무 적용 제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통지/신고 사항을 모두 합하여 통지/신고하여야 한다.

제5장 기 타

제22조(위규 사항 발생 시 조치) ① 직무수행자는 자신 또는 다른 직무수행자가 이 지침에 위반하여 ESG 평가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지하거나 이 지침에 위반하여 ESG 평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상위 결재권자와 준법감시인(단 상위 결재권자가 관련되었을 경우 준법감시인에게만 신고한다)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준법감시인은 지체없이 관련 사실 조사 및 해당 직무수행자의 업무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유지의무) ① 직무수행자는 ESG 평가업무 수행 과정에서 평가 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자료, 기준원의 평가모형, 평가결과(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평가등급 정보는 제외) 등 기준원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생산한 모든 정보·자료에 대하여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직무수행자는 평가 대상기업(그 계열회사 및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기준원의 사원기관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제1항에서 규정한 정

보·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준원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대상기업에 대한 피드백 업무 또는 상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등 기준원의 규정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본부장은 ESG 평가 시스템 관련 용역업체(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평가 대상기업(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 기준원의 ESG 평가 시스템에 접속가능한 자가 기준원의 ESG 평가 시스템 접속 과정에서 지득한 모든 정보자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거나 업무수행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계약조건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의무) ① 본부장은 직무수행자에게 이 지침의 내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이 지침이 개정되거나 법규정이나 사규의 개정 기타 관련 상황의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체 직무수행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안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25조(규정 준수 여부 점검) ① 준법감시인은 ESG기준위원회의 ESG 등급부여 결의 종료 후 ESG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자의 이 지침을 포함한 제반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준법감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내규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의 조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조사, 결과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제1항의 점검·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직무수행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하거나 계좌개설 및 금융투자 상품 거래·잔고내역 등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기록 관리) 준법감시인은 이 지침에 따라 제출된 제반 신고, 보고, 통지, 확인, 조치사항 등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특칙) ① 내부통제기준 제29조 제4항 단서에 따라 ESG 평가업무를 수행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기간 동안 이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원장은 해당 직무수행자에 대하여 이 지침의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산휴가, 휴직 등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ESG 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직무수행자에 대하여 특례 규정을 두거나 이 지침의 적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한국ESG기준원
부칙 이하 생략